

〈번역〉

## 법과대학원 구상과 법사회학 교육

타나세 타카오

김창록 譯\*

### I. 문제의 소재

현재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일반 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구상은, 지금까지의 대학이 장래 법조가 될 사람들에게 대해 충분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법조를 지망하는 학생이 예비교(고시학원 : 역자)에 의존하여 수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교육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지만, 동시에 대학 자체도, 법실무를 둘러싼 실제 사회의 동향에 무관심하여,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의 개선 등, 법조가 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측면도 작용했다. 법조가 될 사람만을 특별히 선발하여 특화된 교육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정수료자에게는 특별한 수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법조자격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구상이다.

다만, 문제도 몇가지 남아 있는데, 예를들면 최종적인 자격수여자의 숫자가 가령 2,000명으로 제한되는 경우, 현재의 사법시험 수험자 34,000명 혹은 법학부정원 50,000명에 대해 계속해서 엄격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법과대학원의 입학 혹은 과정수료 인정 때의 경쟁시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시험의 방식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학교육을 압박할 염려도 있다.<sup>1)</sup> 또한 지금도 법학교육은 과밀상태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고서, 현대의 법조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서, 어학에서부터 교양과목, 첨단법학, 나아가서는 실무교육까지 도입하는 경우, 설령 대학원 2년간을 추가한다고 해도, 학생의 과목

\* 부산대학교 法科大学 助教授

1) 浜田道代, 「法科大学院構想の盲点」, *ジュリスト* 1170号(2000年), 134-135면.

선택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편중되게 될 위험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앞으로 변호사의 숫자도 늘고, 변호사가 취급하는 사건이나 고객 등이 세분화되면, 법학교육의 장에서도 학생은 다양한 메뉴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는 것일까?

학생의 공부는 어느 시대에나 실제 사회에서의 그에 대한 가치부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애당초 전문대학원 구상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OJT를 중시하여 학력이라는 관점에서만 대학을 바라보지 않은 기업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체득한 사회인의 양성을 대학에 기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sup>2)</sup>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좀 더 자신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와 동시에, 그 전문대학원이, 지금까지 연구를 으뜸으로 삼아 온 대학원에 대한 비판으로서, 거기에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역시 대학인의 입장에서 당혹감도 느끼게 된다. 연구와 교육 사이의 시간 배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역시 우수한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학의 최대의 사회적 사명이고, 교육의 기본도 학생이 그러한 연구자의 모습을 보고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아도 많이 있다. 이 연구중심의 대학에 법조양성이라는 과제가 부가될 때, 시간의 배분이나 연구과제의 설정·평가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지향의 태도에 타협이 요구되는 일은 없을까?<sup>3)</sup>

법과대학원 구상에는, 이외에도 법조 양성과 법조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일반법학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sup>4)</sup>,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많지만, 법조의 질과 양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 자체는 우리로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sup>5)</sup> 이 글은, 이러한 법과대학원을 둘러싼 논의를 엄두에 두면서, 필자가 전공하는 법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법실무에 어떻게 관련되며, 또 법조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법사회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는 점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 2) 合田隆史, 「大学改革と専門大学院構想の課題」, **司法改革** 3号(1999年), 29-32면.
- 3) 戒能通厚, 「法科大学院構想と司法改革の課題」, **法律時報** 72卷1号(2000年), 106-111면. 위의 글에서는, 대학교육과 실무양성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4) 利谷信義, 「21世紀への法学教育」, **法律時報** 72卷1号(2000年), 1-3면.
- 5) 「第二東京弁護士会の提言」, **ジュリスト** 1172号(2000年), 179면 이하. 由岐和広, 「法曹養成の目的」, **法律時報** 72卷1号(2000年), 78-81면 등.

## II.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광의로 정의하면 법사회학은 「법의 관찰」을 하는 학문이다. 20세기 초의 미국의 법학리얼리즘은, 당시의 지배적인 법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법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토대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와같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법의 관찰이 법사회학의 과제이다.

그 배경이 된 것은, 로크너사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노동자의 취로의 실태를 무시하고 계약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식적 추론에 대한 혁신적인 법학자로부터의 비판이지만,<sup>6)</sup> 그와 동시에 그 시기에 일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던 프래그머티즘의 영향도 또한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어떤 명제가 진리인 것은 그것을 진리라고 간주함으로써 유용한 사회적 귀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라는 프래그머티즘의 철학은,<sup>7)</sup> 법도 하나의 도덕적 진리로서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프래그메틱한 가치, 법 속에 존재하는 정책을 자각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정책분석」이며, 광의의 법사회학에 바로 그 역할이 기대된 것이다.

호움즈가, 「20세기의 법률가는, 역사가(선례의 탐구자)가 아니라, 통계학이나 경제학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라고 한 예언은, 그대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관한 한 정책분석은, 「이 법리의 배후에 있는 정책은…」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법해석학 속에 정착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법학자 중에 법학 이외에 경제학이나 철학·사회학의 박사 학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sup>8)</sup> 로 리뷰에도 세련된 법경제학적인 분석과 함께, 현대의 사회이론을 구사한 법리의 비판적 독해가 다수 게재되고 있다. 또 학제적인 전문잡지도 많이 있다.

이와같이 법학이 널리 인접과학과 접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사회에서 법의 사회적 역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는 법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자리잡고 있다. 포스너는 「커먼 로의 재판관은 숨겨진 경제학자이다」라는 말로, 커먼 로의 법리가 얼마나 효율성

6) 이 리얼리즘의 소개에 대해서는, M. 호ーワイトツ / 樋口範雄訳, **現代アメリカ法の歴史**(弘文堂, 1996年), 특히 제6장 참조.

7) Richard Rorty, "Pragmatism, Davidson and Truth," in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26-150.

8) 이러한 미국의 법학교육의 변용에 대해서는, 藤倉皓一郎, 「アメリカにおけるロー・スクールの実像」, **法律時報** 72卷1号(2000年), 127-131면 참조.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진화되어 왔는가를 제시하려고 했는데,<sup>9)</sup> 그 재판관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 이루어진 효율성 분석을 학문적으로 세련시킨 것이 법경제학이다. 법의 지배는, 그 법에의 지배, 즉 법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 것일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충동을 촉구하며, 그 합리화의 압력이 인접과학을 구사한 정책 분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리얼리즘이 이루어낸 법의 관찰에는,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이 있으며, 그것도 또한 법사회학의 성립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법이 법으로서 타당하여 가는, 그 프로세스의 관찰이다. 법학리얼리즘의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실태를 보지 않는 형식적 추론, 코옌의 표현에 따르면 「초월론적 넌센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sup>10)</sup> 법이 실제로는 불가피한 흠결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닫힌 추론이 불가능한데도, 그것을 은폐하여 법의 객관성을 꾸며 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러한 법의 불확실성을 직시하면, 실제로 법으로서 당사자에 대해 혹은 사회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고 타당한 것은 「재판관이 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다름아니며,<sup>11)</sup> 법의 공권적 확인이 가지는 권력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법이 법으로서 타당하여 가는 그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는 그러한 관찰을, 그러나, 다시 법의 해석에 회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드워킨과 같은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법의 객관성을 세심 주장하는 네오 포멀리즘도 유력하게 주창되는 것이지만,<sup>12)</sup> 여기에서는, 일단 그 문제를 제쳐두고, 이 리얼리즘의 법의 관찰이 어떠한 연구가 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분석」이다. 재판관의 판단 여하가 실제로 법의 생성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관의 그 판단을 규정하는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연구가 행해지게 된다. 초기에는 재판관의 주관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출신계층이나 정치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연구도 행해졌지만, 이윽고 법이 생성되는 재판의 현상이 보다 복잡한 제도연관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제도 전체로 연구가 확대되어 간 것이다. 또, 리얼

9) Richard Posner, *The Economics of Justice*(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특히 pp. 1-9 참조.

10) Felix Cohen, "Transcendental Nonsense and the Functional Approach," *Columbia Law Review* 35(1935), pp. 809-849.

11) Oliver Wendell Holmes, "The Path of the Law," in *Collected Legal Papers*(Peter Smith, 1952), pp. 167-202. 「내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판소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예언에 지나지 않는다」(p. 173. 1897년의 강연).

12) 법에는 「유일하게 올바른 답이 있다」라는 테제를 제시하여, 리얼리즘에 대항한 것이다. 深田三徳, *法實證主義論爭*(法律文化社, 1983年).

리즘의 실증주의를 관찰하면, 재판관의 법의 확인만 있으면 그 다음은 그대로 법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관찰로서는 불철저하다. 실제로, 법을 당사자를 위해 원용하는 변호사의 역할에서부터 경찰이나 행정의 법집행까지 널리 법이 타당하여 가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많은 경우 법의 해석이라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작동의 정도를 높여 가기 위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규범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실증적인 관찰이 약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이론적인 골격이 견실하지 못하면 산만한 사실의 집적으로 끝나 버린다고 하는 벨런스의 문제가 있어서, 연구가 언제나 실천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분석이 법의 지배의 심화 과정에서 법의 합리화의 기능을 담당할 것과 같은 관계가, 이 제도분석에도 들어 맞는 것이다.

법의 타당을 관찰하는 법사회학의 또 하나의 분석은 「권력분석」이다. 재판에 의한 법의 공권적 확인이 필연적으로 재판관이 가지는, 법을 선언하고 타당하게 하는 권력을 함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은, 리얼리즘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귀결이다. 이 법에 있어서의 권력의 발견도 또한 학문으로서의 법사회학이 해명해야 할 일련의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다.

「조직된 강제장치」로서 법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은 베버이고, 또 근대법 그 자체가 국가의 권력행사를 법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는, 권력의 문제는 법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만, 현재는 그것에 더하여 이 국가의 권력이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행사되는, 그 법 속의 권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지배의 불가결한 요소인 보편성·중립성이라는 개념도, 비판법학과 그 흐름을 이어 받은 페미니즘법학 등에 있어서, 그간 크게 동요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탈구조주의·언어게임·담화론·철학적 해석학 등 현대의 다양한 사회이론이, 이러한 법 속에 숨어있는 권력을 걸어로 드러내고, 그 작용을 세밀하게 해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 타당한 법의 탈신비화이며, 법이 자명한 것으로서 통용되고 있는, 바로 그 배후에서 법을 자명화하고 있는 것을 가시화하여, 우리에게 법을 의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는, 그것은 재판을 비롯하여 법의 중심에서 법을 유의미한 사회적 규율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법률가의 영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며, 정책분석이나 제도분석과 같이 도구로서의 법을 보다 합리적·기능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분석도, 법을 포함한 근대의 사회장치를 가능하게 한 인식의 요소를 의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탈근대적이지만, 동시에 고도로 자명하고 일견 불변인 것으로 보이는 법도 「다른 모양일 수 있는 것

」으로서 반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것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음미하여 보다 좋은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근대의 충동은, 오히려 한층 더 철저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법학교육 속의 법사회학

그러면, 이와같은 법사회학은 대학의 법학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곤란이 있으며, 어떤 공리가 가능한 것일까?

재판관이든 변호사든, 법실무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존재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법의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그 조작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다름아닌 실정법교육이고, 법의 불확실성도 이 레벨의 학습에서는 학설·판례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각각 법의 체계의 적절한 장소에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법이 규율하는 사회의 실태, 혹은 법이 행하는 대립하는 이익들의 구별 등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파고 들 것인가는 가르치는 사람의 지향이나 학생의 익숙도에 따라 다양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르쳐지게 된다. 그 의미에서, 법사회학의 정책분석은 실정법학 속에 일부 편입되어 학생에게도 교육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다만, 같은 정책분석이라도 이러한 실정법 강의 속에 편입된 것이 표면적인 지식에 머문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 가능한 대상을 좁히고, 학생이 스스로 정책분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이해는 깊어질 것이고, 또 실무가가 되고 나서도 사회의 실태에 따라 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예라도 상관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로 들면, 심리요법이나 케이스 워크의 입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관계자로부터의 히어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현행법의 운용·해석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그러한 세미나 등이 조직될 수 있다면, 정책분석을 살아있는 형태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거래를 소재로 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법사회학의 경우도 강의에서는 이 레벨의 교육은 곤란하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강의에서는 불가결하며, 정책분석에 대해서 말하면, 법의 형식성의 요청이 사회적인 실태를 토대로 법을 사고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고 하는 법적 추론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정책분석을 자각적으로 행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일반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다만, 교오토대학에서는 법정보론을 별도로 가르치고 있으며, 매회 증언의 심리학이나 배심연구·형

별의 억지효과·소송에 의한 정책형성 등의 구체적인 테마를 선택해서, 그에 관한 내외의 실증연구를 실제로 제시한 다음, 거기에서의 실험계획법이나 가설검증 등의 통계적인 방법을 학생으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의 분석 자체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 리터러시」를 법학부학생에게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제도분석은 사법제도론·변호사론·재판 외 분쟁처리·행정법 집행의 문제 등 법사회학적인 연구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역이며, 법사회학 강의에서도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어떻게 학문으로서의 법사회학이 그 고유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복잡한 정책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재판관 그리고 법학교육을 받은 일반사회인이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에도, 실은 제도분석을 스스로 행하게 되는데, 법사회학의 수장이 어딘가에서 그러한 실천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기대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실천적 발언은,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을 때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변호사회도 패전후 일관하여 그 항상적인 활동으로서 사법제도의 비판적 검토와 자신의 변호사업무의 반성을 해오고 있다. 실무가 자신 그리고 실정법의 연구자도, 각각 실무경험이나 그 법영역에 특유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제도분석을 행하고 있어서, 법사회학자만이 이 문제에 대한 특권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인접사회과학의 성과를 원용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연구도 축적해 온 법사회학은, 이 학문의 자유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을 산출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권력분석도 필자의 법사회학 강의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법실무와의 관련은 좀더 굴절되어 있다. 비판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의 해석은, 해석을 하는 사람의 주관은 소거하고, 해석이 그 속에서 행해지는 자명한 세계를 망각함으로써, 그 법으로서의 통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소거 혹은 망각을 지적하여 법의 타당을 문제시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이 일상적인 법의 실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법실무, 특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서는, 지금까지 법실무에서 혹은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어 온 것을 철저하게 의심함으로써 새로운 법의 전망을 열어젖힌다고 하는 면도 동시에 있다. 그 의미에서, 이 법의 회의는, 법의 실천이 경직화되어, 영거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적 구상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도 오히려 불가결한 것이다.<sup>13)</sup> 권력분석은 그러한 법의 회의의 작법을 가르

13) Roberto Unger, "Legal Analysis as Institutional Imagination," *Modern Law Review* 59(1996), pp. 1-23. 이 논문을 포함한 비판법학에 관한 소개로는, 棚瀬孝

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법학교육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 IV. 맺음말

이와같이 법사회학은, 장래 법조가 될 학생에게도, 법실무에서 필요하게 될 보다 좋은 법과 보다 좋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판적인 퍼스펙티브를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그리고 실현된다고 한다면 법과대학원에서도 교육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과밀한 법학부의 커리큘럼 속에서 법사회학 교육을 자리매김해 가는 데는 곤란한 점도 많다. 이제 앞으로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메타 레벨의 반성보다도 우선 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실정법교육이 우선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경제로부터 정치·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인접과학이 법학 속에 도입되고 또 활발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사회에서도 앞으로 법의 역할이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면, 역시 참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시장의 논리·정치의 논리·생활세계의 논리는, 그 어느 것이나 법의 논리와 미묘하게 어긋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질적인 논리가 서로 접촉하는 곳에서 법의 한계가 의식되고, 또 법이 반성되어 보다 적합한 규율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로 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이들 인접과학을 대학에서 전문과목으로서 배우고 오며, 때로는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로 스쿨에 입학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고 또 그것을 수강하여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면에서 일본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sup>14)</sup> 일본에서도, 이 갭을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거대한 사법」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학에 조만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천적인 제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양한 학제적 과목을 두고, 강의의 형식으로 그리고 세미나의 형식으로 학생이 조금이라도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실정법과목의 교수, 다른 학부의 연구자, 그리고 법조에 국한되지 않는 실무가 등도 참가하게

雄, 「ポスト現代の法理論」, 神奈川大學評論 34号(1999年), 101-108면 참조.

14) 이 점에서, 미국형의 로 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으로서는 가장 말끔하다. 현재의 법학교육 속에서 「교양과목」의 비중을 늘이는 데는 한계도 있고, 리버럴 아츠가 교양이라고 번역되면, 다소 「修身」 같이 들린다(由岐, 앞의 글, 79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전문과목으로서의 인접사회과학의 이수이다.



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하거나, 학생을 위해 조인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네트워크형의 조직과 함께, 학제적인 연구 그 자체를 자기의 전문과목으로 삼는 전임의 연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구자가 만들어 내는 연구성과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뒤를 잇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이상적인 대학교육일 것이기 때문이다.